保險産業의 社會·經濟的 機能과 發展方向

李 容 根
〈財務部·保險 2 課長〉

目 次

1. 머리말
2. 保險의 社會·經濟的 機能
3. 保險産業의 成長과 特徵
4. 保險産業의 發展方向
5. 맺는말

1. 머 리 말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導入된 保險産業은 1960년대이후 20여년의 비교적 짧은 期間에 어느 先進國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빠른 速度로 發展과 成長을 이룩하였다.

1950年代 이전 美軍政期의 保險行政은 不在및 亂脈相을 보였고, 1950年代에는 6.25動亂과 政治·經濟·社會秩序의 混亂으로 保險産業은 겨우 命脈을 이어 오다가 1960年代에 이르러 法律第973號로 保險業法이 制定(1962.1.15)·施行됨과 때를 같이한 政府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 그리고 政府의 保險保護育成策에 힘입어 1970年代에 이르러 急速한 量的인 成長을 持續하였다.

특히 1977年에 처음으로 마련된 政府의 「保險産業近代化對策」은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質的인 改善과 發展을 위한 制度的인 기틀을 確立하여 주었다는 點에서 保險史上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保險業法, 保險募集團束法,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 大韓再保險公社法 등 保險關係 法令을 하나로 整備·統合한데 이어 專問中間監督機構인 韓國保險公社를 새로 設立하였고 保險紛爭 및 料率審議委員會等의 2個機構를 法定機構化하는 한편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制度의 導入, 生·損保 兼營領域의 擴大, 保險公社 任員의 資格規制등 措置는 保險加入者 保護와 保險專問人 確保를 통한 保險의 社會公共性을 높이기 위한 政府의 强力한 意志의 表現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保險産業은 아직도 1970年代에 누려온 高度成長에 執着한 나머지 保險本質的인 社會·經濟的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態勢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지난날의 量的規模의 擴大現象과 調和되지 아니하는 經營內部構造面의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많은 發展의 素地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問題點을 들추어 하나 하나 改善하므로서 最近 保險産業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課題를 슬기롭게 解決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論壇 1

2. 保險의 社會·經濟的 機能

保險이란 同一한 危險을 안고 있는 多數의 經濟主體가 하나의 危險團體를 構成하여 大數의 法則에 根據하여 構成員으로 부터 醵出한 保險料에 依해 構成員一部가 입은 損害를 補償하는 社會·經濟的인 危險分散의 制度를 말하는 것으로 E.W. Peterson 같은 이는 保險을 人間理性이 考案한 最善의 制度라고 記述하고 있다. 保險은 保險加入者로 부터 保險料를 받아 이를 管理·運用하고 그 加入者가 偶然한 事故를 당한 때 約款에 따라 保險金을 支給하므로 保險者를 中心으로 資金이 循環되며 이러한 資金循環의 過程에서 國民經濟的 機能을 期待하게 될 뿐만 아니라 個別的인 保險契約에서 볼 때에는 保險加入者가 支給하는 保險料와 保險者가 支給하는 保險金사이에는 等價關係가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나 大數의 法則에 의한 危險分散이란 側面에서 社會全體的으로는 等價關係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保險은 社會的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가. 保險의 社會的 效用

保險은 전술한 바와같이 國民經濟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社會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保險은 社會不安의 調和와 分散에 크게 貢獻한다. 이것은 保險의 社會保障制度의 補完的 機能이라고 할수 있는 것으로서 保險은 保險集團內部 階層間의 調和를 圖謀하여 政治的效果를 發揮한다. 經濟的 準備의 合理的인 形態로서의 保險은 偶然한 事故로 부터 입을 수 있는 損害로부터 生活의 安定은 물론 政治的 安定의 基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生活의 不安을 輕減 또는 除去하는 社會的 施設로서의 保險의 本質的 機能은 社會不安의 緩和 乃至는 調和에 貢獻을 한다. 즉, 國民의 生活不安은 곧 社會不安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社會不安은 勞動力의 效果的인 再生產을 沮止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特히 生命保險과 勤勞者災害補償保險등의 社會保險의 奬勵로 國民의 所得의 確保와 老後生活의 安定을 圖謀함으로써 富의 分配過程에 均衡을 造成하여 所得階層間의 調和를 이룩하며, 더 나아가 勞資協助의 實現으로 社會生活의 安定向上에 寄與하는 바가 至大하다. 이와 같이 保險 特히 社會保險의 發達과 함께 社會保障制度의 確立은 貧困·疾病·失業등의 社會惡에 대하여 社會福祉의 터전을 마련하고 健全한 社會精神을 涵養함으로써 政治의 安定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둘째로 保險의 社會經濟的인 利益 또는 效用은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危險의 減少와 損害의 未然防止에도 그 意義가 있다. 「危險이 없으면 保險이 없다」라는 말처럼 保險은 本來 特定事故의 發生에 의한 損害를 補償하여 주는 經濟施設이지만, 保險會社는 事故發生으로 인한 補償責任의 負擔을 적게 하여 會社의 利益을 위하고 保險加入者의 保險料負擔을 輕減하기 위해서 事故發生을 防止·輕減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保險業者는 火災防止를 위한 各種 啓蒙·宣傳勸誘方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生命保險에서는 保險業者가 疾病을 豫防하기 위해서 健康相談所나 病院을 設置運營하기도 한다. 그밖에 積荷의 包裝 改良, 船舶의 構造改善, 港灣施設의 改良에 기여하여 海損發生을 防止·輕減시키고 있다.

나. 保險의 經濟的 效用

保險의 經濟的 效用으로는 첫째로 個人生活과 企業의 安定은 물론 國民經濟의 安定을 도모하는데 있다. 無保險時의 事故發生에 따른 損害補塡을 위한 資金의 負擔 및 消費의 抑制는 궁극적으로 經濟構造를 不安하게 할 것이며, 企業의 罹災로 인한 損害負擔은 市場構造의 變化와 價

格의 上昇, 그 企業과 關聯企業의 倒産 또는 그 企業에 종사하는 勤勞者들의 失職을 招來하는등 國民經濟를 不安하게 할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 保險에 의한 損害補償은 連鎖的인 經濟波及效果를 最少限으로 制限시킴으로써 國民經濟의 安定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保險의 資本蓄積및 資源配分機能을 들 수 있다. 保險加入者 個人의 立場에서 보면 將來의 偶然한 事故發生時 一時巨額 資金支出에 對備하여 保險者에게 納付한 保險料는 貯蓄과類似한 性格을 가지며 原則的으로 그 規模는 事故發生에 對備하여 金融貯蓄에 加入하는 경우보다 小規模가 됨으로서 그 差額만큼은 消費支出로 活用이 可能하다.

또한 企業의 立場에서도 少額의 保險料支拂로서 火災·海難事故등 事故에 對備한 非常準備金으로 積立해야할 巨額의 積立金을 生産目的에 活用할 수 있다는 點에서 企業資金의 效率的 利用에 寄與하는 것이다. 더나아가서 保險은 資金의 授受인 金融에 있어서 融資手續의 擔保物에 對한 危險負擔을 함으로서 資金의 融通을 圓滑히 하는 役割을 한다.

國民經濟的인 側面에서 보면 保險은 投資財源形成 즉 資本蓄積機能과 資源配分의 機能을 遂行한다. 保險契約과 同時에 擧手된 保險料收入과 保險事故發生에 따른 保險金支給間의 時差(time lag)를 通하여 保險資産이 運用되어야 하는바 保險資産은 大部分이 保險加入者에게 되돌려 주어야하는 負債性資産이므로 保險會社는 善良한 管理者의 立場에서 公益性·收益性·流動性 및 安定性을 考慮하여 運營하여야 한다.

保險資産은 現 預金, 貸付, 有價證券買入, 不動産投資등으로 運用되는데 保險事業의 公共性 社會性등에 基因하여 政府는 資産形態別 運用基準을 設定하여 指導하고 있다. 保險資産의 貸付는 主로 保險加入者의 受惠幅增大를 위하여 이루어지나 同一人限度 및 系列企業에 對한 貸出限度등을 두어 規制하고 있으며 預金 및 有價證券買入을 通하여 資源配分效果를 期待할수 있다

萬一 庶民住宅建設등 公共事業이나 重化學工業등 政策的인 分野에 資金을 直接投資하는 경우 당해부문에 대한 雇用增大效果나 投資需要誘發效果를 期待할 수 있으며, 資本市場에서 機關投資家로서 國公債買入을 通한 財政需要充足效果, 會社債및 株式買入을 通한 企業의 施設資金支援效果가 있으며 銀行 短資會社 및 相互信用金庫等을 活用하여 預積金 및 어음割引등을 함으로써 企業의 運營資金支援 및 庶民金融效果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保險은 生産力을 向上시키는 機能을가지고 있다. 保險保護의 存在는 危險性과 不確實性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企業의 生成을 鼓舞시키며 企業家들에게 自信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保險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에 커다란 役割을 하게 하는 革新的인 計劃의 實踐을 주저하게 하므로서 企業意慾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保險의 社會·經濟的機能은 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더욱 變化하기 마련이다.

資本主義의 初期에 있어서 個人의 貧困과 各種 災難과 災害등 損害는 個人의 責任에 屬하였으나 資本主義社會 發展과 더불어 貧困·災害등 生活不安을 하나의 社會現象으로 把握하기에 이르렀다. 資本主義社會가 進步하고 經濟의 發展·成長이 계속되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生活破壞의 危險이 생기고 이러한 危險들은 被害와 苦痛의 範圍를 확대시키고 있다. 疾病, 傷害, 廢疾老齡, 死亡, 失業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財産上의 損害에 의하여 招來된 生活困窮과 企業의 不安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危險은 公害의 發生, 環境汚染, 物價上昇, 景氣變動등의 現象에 못지 않게 더욱 深刻한 문제로 登場하기에 이르렀다.

最近 急速度로 진행되고 있는 産業構造의 變

化와 地域社會의 崩壞, 核家族化의 促進으로 家庭生活의 基盤이 破壞되어 日常生活에 관련한 여러가지 形態의 災害등 危險이 增加되고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形態의 새로운 危險에 對備해서 國民은 自助的인 努力과 手段으로서 私的保障의 施設에 加入하여 私的保障의 手段인 保險商品을 購買하여 國家保障의 限界(national minimum)의 補完을 꾀한다. 여기에 保險產業의 社會·公共的 責任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Saski, Wagner등 수많은 學者들이 主張한 바와 같이 保險은 資本蓄積의 貯水槽로서 또한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貨幣資本의 提供者로서의 二重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二重的인 性格과 活動으로 保險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한 役割과 重要性은 保險의 本質과 機能과의 相互關係에서 얻어진 必然的인 結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保險產業의 責任은 特殊한 企業에 의하여 組織되어 偶發的 事故와 관계가 있는 個人的 財產의 必要를 集團的으로 充足시켜 주는데 있다. 즉 不特定 多數의 國民인 契約者를 對象으로 事故가 發生한 경우에는 確實히 約定한 保險金의 支給을 保證한다는 保險產業의 本質에서 볼때 다른 產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强한 社會公共的인 責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保險產業의 成長과 特徵

우리나라 保險產業은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餘年 동안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누려왔다. 1962年~1981年 期間中 年平均 37.2%의 成長率을 나타내므로서 經濟成長率에 比하여 4.2倍나 上廻하였고, 國民總生產에 있어서의 收入保險料 比重은 1962年의 0.50%에서 1981年에는 3.29%로 크게 增大되었으며 1人當 負擔保險料도 國民所得의 上昇에 따른 可處分所得의 增加에 힘입어 1962年의 0.51「달라」에서 1982年에는 무려 105.4倍가 增加한 53.8「달라」로 擴大되었다.

保險產業成長推移

區 分	1962	1981	增減(倍)	年平均成長率(%)
人 口(千 名)	26,513	38,723	1.46	2.3
GNP(億 원)	3,555	431,563		8.77
1 人當 GNP ($)	87	1,636	18.8	—
收入保險料(百萬원)	1,754	1,418,098		37.2
보험료/GNP (%)	0.50	3.29	6.6	—
1人當 保險料 ($)	0.51	53.75	105.4	—

그러나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成長은 ,80年代初부터 先進國의 保險貿易政策의 持續과 國內景氣의 沈滯에 따른 保險需要의 減退現象과 損害保險의 對象이 되는 各種 形態의 產業危險의 新規 登場의 減少傾向으로 漸次 鈍化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保險外的 環境變化에 對處하기 위하여 지난날의 保險產業成長의 特徵을 들추어볼 必要가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保險產業이 先進國에 比하여 成長速度와 量的擴大 規模가매우 빠른 速度로 急膨脹하였다는 點이다. 우리주변의 經濟·社會的 發展의 論理와 現象이 그렇듯이 急速한 量的인 擴大는 이에 相應하는 質的發展을 看過하기 쉽다는 것이며 保險產業도 이러한 側面에서는 例外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高度成長의 主要動機와 背景이 保險經營의 內部的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保險에 관련한 外部的 環境變化에 있었다는 點이다.

바꾸어 말하면 保險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저위인데도 보험자는 실적주의에 치중한 연고모집등 과당모집경쟁과 경제성장에 수반할 保險需要增大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였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두가지의 保險史的 成長特徵때문에 保險內的 經營管理의 面에서 市場規模의 擴大, 市

場의 質的인 變化過程에 效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實踐力을 培養하고 있지 못하였고, 더우기 現代 企業이 요청하는 創意와 科學的 思考에 의한 技術革新을 할 수 있는 體系的이고 能動的인 經營風土가 造成되지 못하였음이 事實이다. 다시말해서 保險産業의 發展의 關鍵은 어디까지나 保險의 本質的인 社會·經濟的 機能인 經濟的效用性을 十分發揮하고 市場性에 입각한 經營의 效率性을 提高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發展은 앞에서 指摘한바와같이 保險外的 環境의 急速한 變化로 말미암아 受動的 經營姿勢下에서 量的인 集積·擴大에 치우친 나머지 保險産業 發展의 두가지 要因을 크게 缺하였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保險産業은 三重的인 强한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 그 하나는 保險自由化의 國際的 물결에 휘말려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있는 國內保險市場의 開放이라는 對外的 壓力이며 다른 하나는 急變化 過程을 밟고 있는 市場動向에 副應한 經營管理構造 改善의 保險事業 內部的 壓力이며, 세번째는 소득수준의 上昇 및 消費水準의 高度化와 多樣化에 따른 「콘슈머리즘」(consumerism)의 强力한 擡頭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保險産業이 直面한 세가지 形態의 挑戰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保險本來의 社會·經濟的인 機能을 效果的으로 遂行하는 길은 먼저 保險産業 內部的 經營管理環境을 改善하는데 있는 것이다.

急速하면서도 多樣한 形態로 進行되고 있는 社會·經濟的 環境變化에 迅速하게 對處하고 保險本質的 社會·經濟的 有效性을 提高하여 社會保障的 補完의 機能을 充實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緊要한 일은 保險經營管理構造와 經營活動의 脆弱性으로 부터 벗어나 이를改善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企業經營의 效率性은 그企業의 經營構造와 經營活動의 兩面性을 合理的으로 調和시키는데서 비로소 確保됨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保險經營에 있어서 商品의 內容, 販賣(募集)組織, 販賣規模, 販賣方式 管理者 및 從業員의 質과 量, 管理組織 및 技術등 비교적 恒久的인 性質을 가지고 있는 固定的 生産要素는 經營構造에 屬하고 이같은 經營構造의 回轉 즉 每日每月 同一한 方法으로 反復的으로 행하여 지는 性質이 經營活動에 屬한다. 따라서 經營活動은 經營構造가 絶對的인 前提條件으로 되어 經營活動을 制約한다. 다시말해서 經營構造가 脆弱하고 合理的으로 形成되지 못하였을 경우 效果的이고 合理的인 經營活動은 期待하기 困難한 것이다.

4. 保險産業의 發展方向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保險産業은 1970年代의 急激한 量的成長期를 지나 1980年代에 접어 들면서 成長의 鈍化傾向을 나타내면서 여러가지 形態의 經營構造的인 취약성이 최근 保險市場의 急速한 與件變化에 刺戟되어 매우 크게 그리고 濃度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가운데서 代表的인 몇가지를 例示하여 보면 첫째 保險經營의 基礎資料로서 必須要素인 經驗統計의 未備, 둘째 保險會社의 機能別 專門性의 缺如, 세째 保險商品의 類似性 未脫皮, 네째 保險募集組織의 脆弱, 다섯째 保險資産運用의 非效率性등을 들 수가 있다.

최근 政府에서는 經濟政策運用方式을 政府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으로 漸次 그 轉換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自律化政策으로의 方向轉換의 主된 動機는 經濟의 運營權을 民間企業에 賦與하므로서 政策決定의 機敏性과 創意性을 十分發揮토록 하고 모든 民間企業이 自律競爭을 通하여 經營基盤을 確固하게 하고 競爭力을 强化하여 國際經濟社會의 開放體制에 적응할 수 있도록 企業體質을 培養하자는데 있는것이다

保險産業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지

난 10數年 동안의 過保護政策이나 船團行政을 止揚하여 保險經營의 創意와 自律 그리고 責任의 三大要素가 合理的으로 調和를 이루는 企業風土와 經營姿勢의 確立을 促進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 保險業界에서는 自律化라는 槪念을 誤解한 나머지 保險의 自律化만을 保險發展의 捷徑인 것처럼 성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않다. 元來 自律이란 規律主體를 外部的인 것으로 부터 內部的인 것으로 轉換함을 意味하는 것으로 責任의 所在가 아울러 內部로 歸屬됨을 말한다. 保險의 自律化라면 現在의 不完全競爭形態를 完全競爭으로 履行하여 가는 過程을 말하는 것이며 換言하면 保險會社의 設立 및 解散의 自由化까지 包含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保險은 商品效用의 未來性, 不確定性을 他產業製品과의 相異性, 契約方式의 附合契約에 의한 不對等性, 保險料率算定의 特殊性, 保險資產運用方式의 特殊性등 保險의 特性이 公共性과 社會性을 强力히 要請함으로서 기존 保險加入者를 保護하고 保險의 公信力을 維持하기 위하여는 保險產業自律化에는 스스로의 內在的 限界가 있다고 본다. 또한 保險은 다른 產業에 못지 않게 技術集約的인 產業이다. 따라서 어느 分野에 못지 않게 專門性을 必要로 한다. 왜냐하면 不特定 多數國民의 財產과 生命을 맡아서 管理하고 保障해 주는 公共的 機能을 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保險產業도 하나의영리산업으로서 보다 廣範한 公益性의 要請에 對應하기 위한 營業基盤의 擴充을 圖謀하기 위하여서는 經營의 自律性의 確保問題 역시 重視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現實的인 與件의 감안없는 급진적인 自律化란 여타 경제문제의 경우에서처럼 正(+)의 효과보다는 負(−)의 效果가 더욱 많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漸進的인 自律化措置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意味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發展을 위한 몇가지 個人的인 提案을 내고자 한다.

가. 保險經驗統計의 確保 및 保險料率 構成基準의 合理化

保險技術의 根本目的은 保險效果 즉 保險團體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주는 效果인 一定한 危險에 대한 保障과 그 代價로 支拂하는 保險料와의 一致를 얻는데 있다. 이러한 收支의 一致 즉 收支의 相等을 求하는 學術的 方法은 過去의 危險發生記錄을 整理한 資料인 統計와 앞으로에 있어서 發生의 頻度와 規模에 관한 蓋然率(probability)의 理論인 統計 數理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保險產業의 技術的 基礎는 어디까지나 正確한 經驗統計의 集積과 그 体系化에 의하여서만이 確立된다. 더우기 用役을 生產하고 販賣하는 것을 事業의 本質로 하고 있는 保險에 있어서 事故나 死亡의 豫測을 위한 諸般 統計를가지지 못하고는 合理的인 用役의 生產이나 圓滑한 販賣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優先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課題는 保險種目別, 危險別, 商品別 純保險料와 附加保險料의 統計的·數理的 把握에 의한 正確한 標本을 作成, 이를 體系化하므로써 保險料率을 適正하고도 合理的으로 決定해야 할 것이다.

保險料率 算定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原則 즉 保險技術的 公正의 原則, 給付 反對給付均等의 原則의 遂行을 위하여는 먼저 客觀的인 危險의 把握과 契約者의 告知에 의거한 個別的 危險의 評價, 損害經過에 관한 經驗의 集積이 必要하며 一定期間에 發生한 損害의 數와 觀察된 契約數의 比率인 損害頻度=損害發生確率과 個個의 損害事故의 때, 支給하는 保險金의 平均額 즉 平均的 損害의 額의 觀察에 따라 危險의 程度를測定하여야 하며 保險技術的 公平의 原則에 입각

하여 危險의 程度에 따라 保險料率의 差等을 公平하게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保險이라는 制度는 經濟學的으로 볼때 保險用役의 價格인 料率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또 成立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保險料率은 保險經濟的인 側面과 保險經營的인 側面에서 볼때 매우 重要하며 또한 恒常 合理的이고 適正하여야 하며 不當하게 差別的이어서는 決코 않된다. 保險加入者로 부터 거두어들인 保險料 가운데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으로 支給할 純保險料의 保險會社의 經費部分인 附加保險料의 構成基準이 適正하지 못하고 不合理할 경우 保險本質的인 經濟的 效用性과 保險會社의 經營의 効率性은 期待할 수 없게 된다.

現在 保險業界가 使用하고 있는 料率構成基準은 危險別 商品別로 細分化되어 있지 못하므로 손해율 변동에 따른 요율변경측면에서 硬直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保險經營의 技術的 基礎가 되는 諸般 統計를 確保하여 合理的인 用役의 生產과 圓滑한 販賣가 하루빨리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완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料率檢證制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앞으로 保險料率의 彈力的 運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나. 保險會社의 機能別 專門化

保險會社의 主要機能은 商品開發 및 販賣, 危險의 評價 및 引受管理, 損害査定, 資產運用등 다섯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經濟的 環境속에 位置한 保險會社는 「마아케팅」(marketing)에 의거 恒常 國民大衆이 어떠한 商品을 願하는 가를 體系的으로 研究分析하여 既存商品의 質을 改善, 補完하고 安定된 「매스·마아케트」(mass market)를 開拓, 維持하기위하여 募集人 및 代理店등 募集組織을 管理하고 募集網의 擴充과 販賣力의 强化에 努力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引受된 危險을 大數法則에 의하여 危險의 分散과 保險金額의 平均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再保險을 行하며 다른 保險會社로 부터 다른 良質의 危險을 引受하므로서 保有契約高의 大量化를 期하며 또한 危險의 輕減에도 貢獻하게 된다. 이렇게 引受된 危險에 不意의 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 保險會社는 保險契約者에게 迅速 公正하게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그리고 保險會社는 保險契約者로부터 醸出된 保險料의 一部를 準備金으로 積立하여 이를 安定性, 收益性, 公共性 流動性의 原則에 입각하여 効率的으로 管理·運用하므로서 保險의 金融的 機能을 充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이러한 保險會社의 主要機能은 그 各 機能에 따라 專門化되어야 한다. 이는 現代企業經營이 要求하는 共通的「패턴」이며 企業經營 成敗의 關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保險產業은 長期間에 걸쳐 募集에서 부터 保險金 支給에 이르기까지 保險會社가 直接 擔當하므로서 各機能別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各機能別 特性을 發揮할 수 없었음이 事實이다. 특히 保險會社의 經營管理의 方向이 營業(募集分野)에 集中되어 다른 主要機能이 麻痺되는 結果마저 招來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保險의 販賣(募集)機能은 商品性質에 따라서 募集人이나 代理店에 맡겨 募集의 專門化 및 職業化를 實現하고, 危險의 引受는 「푸르던트·언더라이터」(prudant underwriter)를 養成하여 專門化 科學化하며, 損害額 및 保險金의 公正한 査定은 損害査定人이 專擔토록 하는 등 分野別 機能別 專門化를 促進하여 保險經營의 効率性을 提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保險商品의 整備 및 特性化

우리나라는 1970年代 이후 急速하게 進展된 產業構造의 變化와 함께 國民大衆의 意識構造및 生活樣式이 크게 變革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保

險商品에 대한 國民大衆의 需要水準의 高級化및 多樣化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地域會社의 廣域化와 核家族化, 各種 災害 등 危險의 增加 및 大型化에 따른 國民의 慢性的 潛在的 生活不安이 高潮化되는 한편 國民의 生活安定의 必要와 未來의 經濟的 保障에 대한 慾望도 더욱 높아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保險商品은 이러한 國民大衆의 性向에 맞추어 開發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供給者인 保險事業者의 一方的 必要에 의하여 開發된 느낌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旣存의 商品에다가 給付率만 變形시킨 類似商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民營保險商品은 社會保障制度에 의한 公的인 保障으로서 모든 國民生活에 관련한 危險을 充分히 또는 完全히 保障할 수 없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國民 스스로의 自助的 手段으로서 私的 保障을 위하여 購買되는 特殊性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社會保障의 限界性(national minimum)을 補完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保險商品은 어디까지나 市場性의 正確한 把握에 의한 國民生活에 不安을 주는 各種 새로운 危險을 찾아 내어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生活의 安定을 도모하는 方向에서 開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先行되어야 할 課題는 現行 協定料率의 自律領域擴大와 危險別 特性을 度外視한 商品構造를 改善하고, 商品의 質을 高級化 또는 特成化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約款의 明瞭化 平易化를 기함으로써 보험의 生活化, 大衆化를 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라. 保險募集組織의 强化

保險產業은 無形, 觀念的 商品을 國民大衆에게 提供하는 一般 生產企業과는 特異한 機能을 遂行한다. 따라서 保險에 대한 一般大衆의 需要와 選好는 오직 販賣者의 接客態度 保險에 대한 一般的인 評判(reputation)과 認識 如何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또 保險에 대한 有效性 認識도 保險에 加入한 이후 保險會社가 供與한「서비스」의 程度에 의하여 左右된다.

따라서 保險產業에 있어서 募集機構의 문제와 募集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資質문제는 保險事業經營의 成敗를 가름한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간 保險規模의 擴大와 保險의 社會, 經濟的 役割과 使命이 크게 浮上됨에 따라 保險에 대한 一般國民의 認識이 相當히 改善되었다고 믿으나 아직도 不完全販賣로 인한 中途解約事態, 告知義務違反에 관련한 保險紛爭의 增加 損害保險의 高額契約을 둘러싼 過熱競爭등 募集上의 病弊가 是正되지 않고 있어 契約者로 부터 不信과 不平을 招來하고 있다.

外形成長 爲主의 販賣方式을 脫皮하여 募集組織을 强化하고 募集從事者의 質을 높여 精銳化하므로써 保險契約者에게 보다 良質의 서비스를 提供하고 그 波及效果를 擴大하여 潛在的 市場需要를 創出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社會的 信賴를 回復하는 捷徑이다.

마. 保險資產運用의 效率化

保險會社의 資產은 信託財產性格을 가진 他人資本과 擔保資本의 性格을 가진 自己資本으로 構成되고 있다.

이 信託財產의 性格을 가진 他人資本은 保險契約者가 醸出한 保險料의 蓄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反하여 擔保資本의 性格을 가진 自己資本은 株主가 낸 資本金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保險資產은 그 大部分의 契約者로부터 醸出한 保險料의 蓄積 資金으로서 信託財產的 他人 즉 國民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運用 및 管理는 어디까지나 社會·公益的인 方向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保險의 社會保障의 補完的 機能 외에 金融的 機能은 保險會社의 經營要件 즉 保險事業의 健全한 經營을 維持하는데 있어서 絶對的인 要素이다.

따라서 保險資產의 運用은 安定性, 流動性, 收益性, 公共性의 原則에 立脚하여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保護, 增進하는 方向에서 契約者에대한 受惠範圍를 擴大함은 물론 國民所得, 經濟循環과 國民의 投資活動에 寄與하는 方向에서 健全하게 運用되어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앞으로 保險資產 投資에관한 規制나 制限을 漸次 彈力化해 나가는 것이 밀람직할 것으로 본다.

5. 맺 는 말

우리나라 保險產業은 政府의 金利引下 措置와 계속되는 景氣沈滯등 惡條件으로 인하여 經營收支의 惡化는 不可避할 것이다. 이러한 保險外的 不利한 環境은 短期間에 그치지 아니하고 長期化될 可能性 마저 없지 않다.

더우기 公正去來法의 適用문제, 保險自由化의 國際的壓力의 加重, 保險에 대한「콘슈머리즘」(consumerism)의 强力한 擡頭등 現象은 우리나라 保險產業이 直面한 試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試練期에 處하여 우리나라 保險產業은 지난 1970年代의 好況의 굼에서 벗어나 그동안 量的成長 基盤을 바탕으로 하여 保險의 本質的 社會·經濟的 效用性을 增大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保險의 社會·經濟的 效用 增大의 方案은 保險社會의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意志에 의한保險經營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일이다. 다시말해서 保險商品의 社會·公共性의 發揮, 契約者 保護를 위한 諸般制度의 改善등 보다 積極的인 經營姿勢를 確立하여 民營保險會社가 안고있는 社會保障의 補完的 機能을 充實히 遂行하지 않으면 않된다. (☆)

保險用語解說

付保比率 : 어떤 保險의 目的에 관해 그 保險價額에 대하여 실지로 付保한 保險金額의 比率을 말한다.

付保比率이 100%이면 全額保險이며, 100%未滿이면 一部保險이다,

火災保險契約의 特別方法인 付保比率條件附 實損補償契約에 있어서는 契約者가 一定한 約定比率을 선택하고 保險者는 損害發生時에 있어서 付保比率이 그 約定比率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普通保險約款에 定해진 比例補償의 規定에 관계없이 保險金額을 限度로하여 實損害를 補償한다.